

IFRS17 시스템 구축으로 끝인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surance FS
한유기 Principal



IFRS17 시스템 구축으로 끝인가?

들어가며

IFRS17 보험사만의 준비로 되는가?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각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 회계를 하나의 통일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보험 회계에 대한 기준서 IFRS17 ED(Exposure Draft)(이하 "IFRS17")¹⁾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IFRS17은 지난 2010년 ED가 최초 발표된 이래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그 시행일도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는 IFRS17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이 과거에는 없었던 시가법에 의해 측정이 되는 이른바 보험회계의 대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은 IFRS 기준을 100% 도입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국내의 보험사는 IFRS17에 대한 기준서 분석, 영향 분석,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년 전부터 진행하였고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안정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IFRS17과 관련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무진과 회계법인은 물론 관련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IFRS17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는 회계시스템만이 아닌 IFRS17로 인하여 현재 보험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규와 감독규정, 세법 등의 규제 사항과 보험사 내부의 경영계획, 성과관리 등의 관리회계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중 보험사의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관리회계 부분은 차치하고, 보험사에 적용이 되는 법규, 감독규정, 세법 등의 규제사항(이하 "제 규정") 또한, IFRS17로 인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IFRS17 회계에 대한 대응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 규정에 대한 정비는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제 규정의 정비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IFRS17 도입으로 인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 규정에 대한 정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이나, 그중 보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3가지, ① 보험업감독규정의 계약자배당, ② 상법과 상법 시행령의 주주배당가능이익, ③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현재의 규정과 IFRS17이 도입될 경우 그리고 현재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어떤 문제점과 이슈 사항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제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제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 2019년 6월 수정된 ED 발표하였으며, 시행일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

먼저 IFRS17에서 보험사에게 보험부채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조하고자 하는 3가지 제 규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자.

IFRS17에 따른 보험회계처리는?

시가법에 의한 보험부채평가란?

흔히들 새로운 IFRS17이 적용되면 현재 원가법으로 계상된 보험부채를 시가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증가한 보험부채는 국내 보험사를 자본잠식에 빠지게 하고, 또한 금리(할인율)에 따라 보험부채의 규모가 변하여 변동성이 커지므로 보험사는 이러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의 보험부채(준비금)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최초로 추정된 가정에 근거하여 결산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금액을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보험부채로 계상한다. 그러나 IFRS17에 따른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자와 체결된 보험계약(또는 약관)에 따라 모든 미래의 현금흐름(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 기타 비용의 지출 등 포함)을 추정하고, 이를 보험부채에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을 하여 결산 시점의 보험부채를 계상하게 된다.

달리 말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험기간 전체로 보면, 보험계약자에게 받는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업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마진이 되는 것이므로 IFRS17에서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이행 현금흐름(BEL+RA)과 계약서비스마진(CSM)으로 구분하여 보험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1과 같이 보험사가 보험 전 기간 동안 받는 총 보험료 400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흐름 300과 현금흐름 추정과정 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50, 그리고 보험사의 마진 50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림1. IFRS17 보험부채의 구성과 정의

		보험부채	정의 및 의미
보험료 (누계400)	원가	BEL 최적추정부채 (현재가치 300)	◆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의무 - 장래 현금 유출(보험금 및 사업비) - 장래 현금 유입(보험료) - 사업비(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보험과 직접 관련된 것만 포함 -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모든 리스크를 고려함(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환급 등도 포함)
		RA 위험조정 (평균금액 50)	◆ 부채추정의 불확실성 보완 - 현금흐름추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부채 - 보험사 위험관리 수준(경영관리의 질)의 척도
	마진	CSM 계약서비스마진 (장래이익 50)	◆ 보험사의 장래 이익 - 총보험료 - 보험원가(현금유출 + 위험조정) = 계약서비스마진 - 보험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전환

이렇게, IFRS17에 따른 보험부채는 계약과 관련한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이 추정되어야 하며, 보험업 감독 규정상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금액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과 현재가치로의 할인을 하여야 하므로, 현금흐름의 변동, 할인율의 변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미실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실현손익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상의 주주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차감항목인 미실현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보험회사의 이익²⁾은 수취한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의 지급, 준비금의 적립(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계산되나, IFRS17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의 이익은 수취한 보험료가 아닌 예상보험료와 계약서비스마진의 상각금액 등으로 구성되는 수익에서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즉, 보험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이 현금주의가 아닌 보험사가 추정하는 현금흐름과 계약서비스마진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과세표준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전입액이 IFRS17 재무제표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IFRS17에 따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이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에게 직면한 제 규정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며, 지금부터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이슈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독규정 상 계약자배당을 산출하기 위한 유배당이익은?

계약자배당의 財源이 무엇인가?

1.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상 계약자배당의 산출

보험회사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를 기초로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초보험료의 계산 시 산출한 사망률, 사업 비율 등이 추후 실제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익의 재원이 모두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상품 중 보험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만든 상품이 유배당 상품이며, 이러한 유배당 상품에 보험회사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여 주는 금액이 계약자배당인 것이다.

이러한 계약자배당을 현재 보험사는 매 결산 시에 부채로 적립을 해야 하며, 그 종류는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존손실준비금이다. 이러한 계약자배당의 계산을 위하여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21조와 제122조의 2항에 따라 일반계정 내에서 계약자배당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 계리를 해야 하며, 보험업법 121조의 2항과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 및 적립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6-13조에 따라 매 결산 시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하 "유배당이익")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를 6-1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통하여 개별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자배당을 산출하기 위한 유배당이익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사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¹⁾이라고 보고 있다.

2. IFRS17이 도입될 경우 계약자배당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현재 국내에서는 IFRS17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계약자배당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가법과 시가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원가법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을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자는 주장이며, 시가법은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하여 IFRS17에 따른 유배당이익에 근거하여 계약자배당액을 산출 하자는 주장이다.

원가법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배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현행 결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IFRS17 결산을 추가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나, 시가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자배당을 산출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변경되어야 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시스템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IFRS17이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법론이 선택되더라도 계약자배당에 대한 현금흐름은 당연히 보험 부채에 포함이 되어 계상되어야 하며, 시가법(IFRS17과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첫째,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과거에 고금리로 판매한 유배당상품²⁾에 대한 계약자배당이 원가법으로 계산을 하면 유배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시가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유배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보험상품의 전 기간 동안 계약자배당금액은 두 방법에서 동일하여야 하나,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받는 계약자배당액이 두 방법에서 달라지게 된다. 즉, 시가법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의 전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자배당금액이 원가법에 비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유배당이익의 재원이 되므로 미래에 발생할 계약자배당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IFRS17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추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기순이익은 계약자배당금액이 확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다. 즉 IFRS17에 따른 유배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험사의 당기순이익과 계약자배당금액의 산출 과정이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6-13조 7항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변경될 경우 동 금액은 포함

2) IFRS17 시행 전에 판매된 유배당상품에만 해당

셋째, IFRS17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보험계약의 최초 판매 시점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계약자배당현금흐름 포함)와 관련된 모든 보험부채현금흐름과 보험계약자에게 수취할 보험료와의 차이로 계산되는 순수한 보험사의 마진금액이다. 이러한 마진 금액을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다시 계약자배당의 재원으로 하게 되면 이중 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보험업감독규정 제 6-13조 1항에서는 “생명보험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잔여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배당이익에는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기타포괄손익(재무상태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IFRS17이 도입될 경우 회사가 할인율변동효과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은 계약자배당의 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자배당현금흐름은 IFRS17 보험부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현금흐름이므로, IFRS17이 도입될 경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주주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1. 현행 상법상의 주주배당가능이익

보험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이익 창출을 통한 배당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국내의 보험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배당은 이러한 상장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주주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는 상법 제 462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이며, 그 금액은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법정준비금(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차감하고 상법 시행령상의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대략적인 산출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주주배당가능이익의 산출구조

주주배당가능이익의 산출 구조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순자산 총계	X조 XXXX억
(차감항목)	
자본금	조 XXXX억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조 XXXX억
이익준비금	조 XXXX억
미실현이익	조 XXXX억
주주배당가능이익	조 XXXX억

그림3. 상법 제 462조와 상법 시행령 제 19조

[상법 제 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 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 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 446조의 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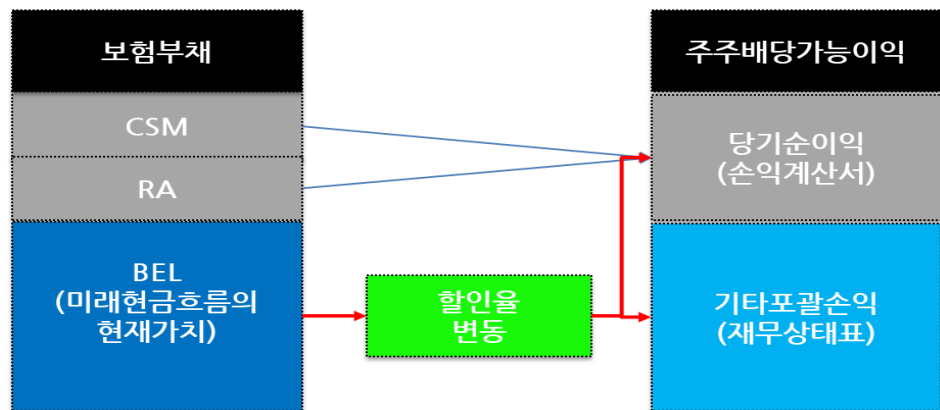
②

이러한 산출 구조에서 회사의 주주배당가능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순자산액에서 차감되는 미실현이익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2. IFRS17의 특징 및 주주배당가능이익의 영향

IFRS17은 아래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부채를 BEL+RA+CSM으로 구분하여 매 결산기에 시가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변동은 손익계산서(당기순이익)와 재무상태표(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매 결산 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의 변동은 주주배당가능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순자산(손익계산서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4. IFRS17보험부채의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영향



이러한 보험부채의 할인율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상승할 경우 보험부채를 감소시켜 순자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러한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영향을 당기순이익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손익변동성을 너무 크게 하여 주가, 배당 등 회사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부분이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의 영향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이는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IFRS17 도입 시 주주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

현행 상법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순자산에 포함되게 되며 이러한 미실현이익이 배당재원이 될 경우 회사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법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법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실현손실과 이익에 대한 상계 등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국공채 100억 원과 회사채 100억 원을 매입하였으며, 1년 후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평가금액은 110억 원, 회사채 평가금액이 90억 원일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기초와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나(기초 총자산 200억 원(국공채 100억 원 + 회사채 100억 원), 기말 총자산 200억 원(국공채 110억 원, 회사채 90억 원)),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국공채에 대한 평가이익 10억 원만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으로 차감이 되어, 배당가능이익은 190억 원으로 산출이 된다.

이러한 상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주주배당가능이익 계산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IFRS17이 적용될 경우 더욱 확대될 것이다.

- ① 주주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가산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지나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각 자산 및 부채별로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구분 관리를 해야 하는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상기 예에서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나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은 국공채에 대한 미실현이익 10억 원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② 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실현이익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그 적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정확한 주주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규정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상기 예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국공채와 회사채 각각에 대하여 미실현손익을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부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 즉 보험부채의 평가를 위한 보험 Portfolio/집합의 구분 범위에 따라 미실현손익의 금액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IFRS17이 도입될 경우에는 IFRS17 최초 전환에 따른 소급적용 시 보험부채의 할인율 변동 효과를 당기 손익/기타포괄손익 중 회사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다.
- ③ IFRS17이 도입될 경우 현재 특별계정으로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한 줄로 구분 표시되고 있는 항목이 연결자회사와 동일하게 자산과 부채별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따라서,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미실현손익을 주주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몫이므로 관련된 자산부채의 손익이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이 주주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일반 회사와 영업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료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들어오는 데 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은 실제보험료가 들어온 시점과 달리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 지급되며, 그 금액의 크기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사는 ALM 등을 통한 Risk 관리, 포트폴리오 투자, 배당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하므로, 배당에 대한 규정을 일반 회사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17을 도입할 경우 더욱더 커질 것이다.

보험사의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험사는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가?

1. 현재의 보험사에 대한 과세표준

현재 보험사는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부채(준비금)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제 3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57조 등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보험부채는 대부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아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보험사의 수익(익금)은 현금주의로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된 보험금과 사업비, 보험료에 대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동일하게 현금주의(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FRS17에 따른 회계상 수익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기에 따른 예상보험금과 계약서비스마진의 상각금액으로 구성이 된다. 즉, 현금의 유입(보험료)과는 관련 없이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다.

그림5. IFRS17에 따른 보험사 손익계산서의 변경

현행: IFRS4			IFRS17		
영업수익	보험수익	XXX	보험수익	예상보험금	XXX
	투자이익	XXX		위험조정변동	XXX
	기타이익	XXX		서비스마진변동	XXX
영업비용	지급보험금	(XXX)	보험비용	지급보험금	(XXX)
	준비금전입	(XXX)		사업비등	(XXX)
	사업비 등	(XXX)	N/A		
	투자비용	(XXX)	투자이익	XXX	
			투자비용	(XXX)	
영업외손익	XXX	기타손익	XXX		
당기순이익	XXX	기타포괄손익	XXX		
기타포괄손익	XXX	총포괄손익	XXX		
총포괄손익	XXX				

또한, 회계상 비용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과 사업비로 인식이 된다. 그러나, IFRS17이 적용될 경우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준비금전입액은 없으며, 현재는 없는 할인율의 변동 영향 등이 추가적으로 계상이 된다. 즉,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양상이 보험료, 보험금 등의 현금과는 무관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2. IFRS17에 따른 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

현재 IFRS17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세법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IFRS17에 맞게 변경할 것인가'이다.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보험사는 현행 IFRS4결산과 IFRS17결산을 병행 수행하여 IFRS4에 따라 현행과 동일한 체계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IFRS17에 따라 세법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세법 체계와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고, IFRS17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슈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현재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준비금전입액을 어떻게 산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현재의 법인세법상에는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한 준비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경우 동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IFRS17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는 준비금전입액이 없다.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둘째, IFRS17이 최초 도입이 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부채가 변동하게 되고, 변동된 보험부채는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할인율 영향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한 경우)으로 나누어 재무제표에 계상이 된다. 이렇게 인식된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은 유보사항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며, 각 보험부채가 실현되는 시점에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 즉 할인율 변동 효과 등에 대하여 세법상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세법 규정 상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한 평가금액은 익금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원가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 시 적용된 할인율에 대한 평가손익이 IFRS17이 적용될 경우 모두 부인될 것이며 이렇게 부인된 평가손익은 유보로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익금과 손금에서 부인되는 항목과 IFRS17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계산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신계약비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7년 이내에 상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IFRS17이 적용될 경우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동안 상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세법상 어떻게 손금으로 산입할 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RS17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추가적인 많은 세법상 유보 사항을 관리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감독 당국에서는 아래 사항이 미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법상 과세표준을 현행 세법에 따라 IFRS17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일원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행 보험 회계(IFRS4)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이원화)으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보험 회계에 대하여 시가법이 적용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험사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만약 일원화에 의할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보금액을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FRS17에 따른 보험부채는 보험계약별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 전체를 보험위험/관리목적별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험계약의 판매 시점별로 집합을 구분하여 집합별로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국내의 보험사의 경우 현재 예상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30개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연도별¹⁾로 구분하는 집합은 회사별로 상이하며 그 규모도 다양하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보험관련 제
규정의 정비를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FRS17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사는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시스템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회계시스템 구축으로 IFRS17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과 기준서의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도 보험사 내부로는 경영계획, 성과평가 등의 관리회계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고, 지급여력비율 등을 위한 K-ICS에도 대비를 해야 하며, 새로운 회계 환경에 따른 내부의 체질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지금까지 국내의 보험사가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각 보험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보험계약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한 Cohort

그러나, 보험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경영환경변수로서의 제 규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보험사가 IFRS17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또는 관리회계 수립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IFRS17 시스템 구축에 대한 두 번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IFRS17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대변혁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tact

한유기 **Principal**
Assurance FS
yhan@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